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이하 "관리사무소"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 (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은행"이 "관리사무소 "의 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납입 받아야 할 각종 관리비를 수납대행 하는 업무
- 2. 전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자동납부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사무소"의 이체 의뢰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관리사무소"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업무

제 3 조(서비스 중계기관)

제 4조(계좌 및 자동이체일 지정)

① "관리사무소"는 "은행"이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가 이용할 예금계좌 (이하 "수납모계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예금주	예금과목	계좌번호

- ② "관리사무소"는 수납모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자동이체일은 매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은행"의 익영업일을 납기일로 한다.

제 5 조(자동납부 신청의 접수)

"은행"은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자동납부 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이하 "자동납부 신청"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은행"은 자동납부 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소정의 자동납부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2. "은행"은 동 신청내용의 정당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조(자동계좌이체의 처리)

"은행"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계좌이체의 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관리사무소"는 자동계좌이체 전산처리를 위해 아파트 동 호수 및 관리비 납부금액에 대한 내역을 "은행"에게 상호 협의한 일자 (자동이체일 일전 영업일자)의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전송해야 한다.
- 2. "은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대로 자동계좌이체 요청일자에 해당계좌로부터 청구금액을 출금하여 "관리사무소"의 수납모계좌에 일괄이체하고 처리결과와 미처리 명세를 "관리사무소"에 전송하며, 이체요청 금액보다 이체가능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금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출금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3. "은행"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의뢰 받은 대로 자동이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로 발생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하며 "은행"은 "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 7 조(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은 제 6 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규정 및 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납부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1. 이체대상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 2. 이체대상 계좌에 대한 법적절차 등록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

제 8 조(거래내용의 확인)

"관리사무소"와 "은행"은 본 업무의 처리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따로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9 조 (수수료 면제)

본 수납업무에 따른 네트점에서의 송금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제 10 조(기밀유지)

"관리사무소"와 "은행"은 업무수행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수행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이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면책)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회선·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준용사항)

이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한다.

제 13 조(계약의 변경)

"관리사무소"와 "은행"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효력의 발생)

- ① 이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 이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5 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 16 조 (작성 및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와 "은행"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관리사무소) 아파트 소(회)장 (인)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장 (인)